

의안번호	2211269
의 퇴 인	김성원 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0.
추 계 번호	25F360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위기지역 사업장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유지중소기업
등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
1	안 제24조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○ 사업장이 위기지역에 위치한 경우에 대하여 일반 시설 투자 및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등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하여 차등 적용 － 위기지역 범위: 제30조의3제5항의 위기지역 범위 준용 (현행) ①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에 따른 고용위기지역,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, 고용재난지역 등 ② 「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→ (개정안) 위기지역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추가 － 공제율: 위기지역 사업장에 대한 공제율은 다음과 같음 (단위: %) <table><tr><th rowspan="2"></th><th colspan="3">현행</th><th colspan="3">개정안</th></tr><tr><th>중소</th><th>중견</th><th>대</th><th>중소</th><th>중견</th><th>대</th></tr><tr><td>일반</td><td>10</td><td>5~7.5</td><td>1</td><td>13</td><td>6.5~7.5</td><td>2.5</td></tr><tr><td>신성장·원천기술</td><td>12</td><td>6~9</td><td>3</td><td>15</td><td>8~9</td><td>5</td></tr></table> ※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공제율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이상으로 전환된 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제율은 현행과 동일		현행			개정안			중소	중견	대	중소	중견	대	일반	10	5~7.5	1	13	6.5~7.5	2.5	신성장·원천기술	12	6~9	3	15	8~9	5	
	현행		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
	중소	중견	대	중소	중견	대																								
일반	10	5~7.5	1	13	6.5~7.5	2.5																								
신성장·원천기술	12	6~9	3	15	8~9	5																								
2	안 제30조의3제5항 (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)	○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위기지역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포함 － 동 과세특례는 고용유지중소기업 외에도 위기지역에 위치한 중견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음 － 위기지역 범위: (현행) ①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에 따른 고용위기지역,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, 고용재난지역 등 ② 「지역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 → (개정안) 위기지역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추가 － 공제내용: 임금총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 × 50%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세액공제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제1항 (통합투자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30조의3제5항 (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위기지역 사업장의 일반 시설투자 및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차등적용하고,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등 세액공제의 우대공제를 적용할 위기지역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24조제1항 및 제30조의3제5항)
 - 안 제24조제1항은 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일반 투자 및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차등적용함에 따라 해당 기업의 세액공제가 증가하여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 - － 위기지역 범위: 제30조의3제5항의 위기지역 범위 준용
 (현행) ①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에 따른 고용위기지역,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, 고용재난지역 등
 ②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등
 → (개정안) 위기지역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포함

- 공제율: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위치한 경우, 현행 및 개정안의 기본공제율은 다음과 같음
※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본공제율 및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등으로 전환한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은 현행과 동일

[표 1] 현행 및 개정안의 위기지역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

(단위: %)

	현행			개정안 ¹⁾		
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중소기업	중견기업 ²⁾	대기업
일반	10	5~7.5	1	13	6.5~7.5	2.5
신성장·원천기술	12	6~9	3	15	8~9	5
국가전략기술	25	15~20	15	25	15~20	15
- 반도체 기술	30	20~25	20	30	20~25	20

주: 1) 굵은 글씨는 개정안에 따라 위기지역에 상향 적용되는 공제율을 의미

2)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등으로 전환한 기업의 경우 전환 이후 3~5년간 우대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며, 동 개정안에서는 현행과 동일한 공제율 적용

- 안 제30조의3제5항은 위기지역의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과세특례의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법인세 및 소득세수의 감소가 예상됨

-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는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 외에도 위기지역에 위치한 중견기업에게도 과세특례가 적용

- 위기지역 범위:

(현행) ① 「고용정책 기본법」에 따른 고용위기지역,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, 고용재난지역 등

② 「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산업위기 대응특별지역 등

→ (개정안) 위기지역 범위에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포함

- 공제내용: 임금총액의 전년 대비 증가분 × 50%를 법인세 및 소득세에서 세액공제

-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위기지역에 위치한 사업장의 투자 및 임금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향후 해당 지역의 기업규모별·기술별 시설투자 및 임금증가 규모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
- 개정안에 따른 위기지역은 대내외 충격 등으로 지역내 고용과 산업의 약화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

지역으로, 향후 지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및 기간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- 참고로, 2025년 11월 현재 기준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

※ 고용위기특별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없음

[표 2] 위기지역 지정현황(2025.11.기준)

구분	내용
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	전남 여수시, 광주 광산구(2025.8.28.~2026.2.27.)
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	전남 여수시(2025.5.1.~2027.4.30.) 충남 서산시, 경북 포항시(2025.8.28.~2027.8.27.)

자료: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고시(고용노동부고시 제2025-52호, 2025.8.) 및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공고(산업통상부고시 제2025-369호, 2025.5. 및 제2025-608, 609호, 2025.8.)

- 또한,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를 위해서는 지역별·기업규모별 고용 및 일반 시설투자, 신성장·원천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액 등 현황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개정안에 따른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
- 참고로, 2024년 신고 기준 통합투자세액공제(일반 시설투자 및 신성장·원천기술) 및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의 기업규모별 법인세 공제현황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통합투자세액공제 및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 법인세 공제현황: 2024년 신고기준
(단위: 억원)

구분		중소기업	중견기업	대기업	계
통합투자 세액공제	일반	4,406	1,979	8,314	14,699
	신성장·원천기술	16	0.5	207	223
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		3	1	-	4

자료: 국세청 국세통계포털(TASIS)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